

교원자격검정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6.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고 한다)의 교원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4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에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검정종별) 본 대학의 교원자격검정 종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유치원 2급 정교사
2. 보건교사
3. 실기교사

제4조(표시과목 및 학부(학과)) 본 대학의 교원자격검정에 따른 자격의 “표시과목 및 학부(학과)”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부(학과)장,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4.3.1., 2016.12.23.>

제 6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의 교과목 및 학점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3.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
4. 교육실습에 관한 예산 및 결산
5.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교직과정 설치) 교직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공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3.7.1.>

제9조(교직과정 이수 신청) ① 유치원 정교사(2급)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학년 제1학

기부터 교직과정 이수과목표에 따라 해당 학기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 제1학년 1, 2학기에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1학년 2학기 종료 1주전까지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③ 교학처장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10조(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① 유치원 정교사(2급)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이수 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때 정원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1. 제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서 1학년 1, 2학기, 2학년 1,2학기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개정 2013.7.1.>

2.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한 자

3. 근신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중 인성·적성·자질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4. 편(재)입학생은 교직선발 인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으로 한다.

② 이수 예정자의 선발은 당해 학년 교직과정 설치 전공의 승인된 교직선발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앞의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이를 초과할 때는 전공 및 교직과목에 대한 1학년 1학기 및 2학기 평균평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인 경우는 이수 예정자로 모두 선발하되, 2학년 1학기 종료 후에 그 동점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 순에 의하여 확정한다.

1. 2학년 1학기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2. 1학년과 2학년 1학기의 3개 학기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3. 3개 학기간 총 이수 평균평점이 높은 자

③ 우리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한 학년 및 전공에 재·편입학 하였을 때, 교직선발 인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기존 또는 전적학교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확정된 자(이하 ‘교직과정생’)는 해당 학부(학과)로 통보하고, 이를 학부(학과)에서는 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신청) ① 교원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개정 2013.7.1.>

2. 성적증명서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실기교사에 한함) 1부

4.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제12조(검정신청기간) ① 교원자격증 이수 예정자는 수업연한별 마지막 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와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실기교사 자격증 이수 예정자는 (전기 졸업예정자 : 12월 기말고사기간, 후기 졸업예정자 : 6월 기말고사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와 성적증명

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학부(학과)에 한함)을 교학처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② 자격검정의 합격여부는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졸업당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 한 사유로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졸업 후 검정이 가능함

제13조(이수 학점 및 성적 요건)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1.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교직과목의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 전공과목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본 이수 영역과목을 최소 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3. 교직과정생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체 학년에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전체 성적이 75점 이상 이어야 하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과목 22학점이상(교직이론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 교직과목(교직이론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 전공과목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 실기교사 자격증

1. 교직과목 4학점(교육학개론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이상이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과목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이어야하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2.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육부 고시 제 1997-11호) 및 학부(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③ 보건교사 자격증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간호사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이상(교직이론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 간호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이상(교직이론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제14조(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 ① 교육실습은 2학년 제1학기를 마치고 하계방학 중 실시한다. 단, 협력학교가 방학 중인 곳에서는 이수할 수 없다.

② 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직전 학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만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교육실습을 이수할 수 없다.

④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며, 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나 사회교육기

관(시설)에서 가능하다.

⑤ 교육실습비는 학생본인이 부담한다.

⑥ 실습학생은 교육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부(학과)사무실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부(학과)사무실에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및 학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